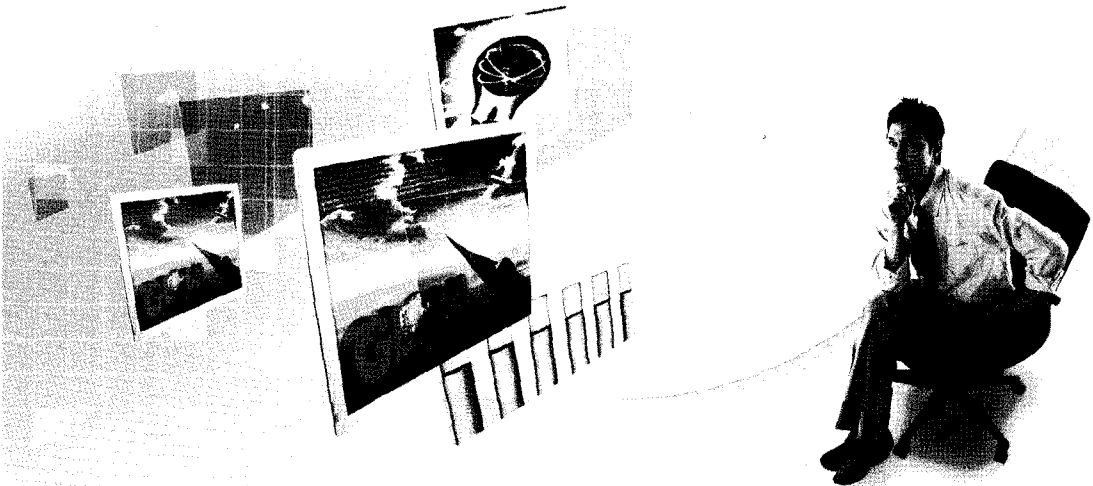


제품안전 행정조직, 전담기관 및 사고조사센터 운영방안(1)



백종섭 교수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 제품안전 패러다임의 변화

※ 국민들의 소득수준과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의식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제 제품안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가. 국내 제품안전 관련 패러다임의 변화

제품안전의 패러다임은 전통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정책으로, 민간부문은 주주이익 극대화 패러다임에서 기업의 이해당사자를 강조하는 패러다임으로 변화가 나타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로 이어지는

추세이다.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사회와 삶의 전반에 대한 안전의식은 식품안전, 제품안전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리콜제도의 활성화, 다양한 유통과정의 문제점 확산추세, 제품안전 관련 제도와 인력의 한계성 노출 등에 대하여 정부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기획·집행·평가할 수 있는 조직과 전문 인력의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나. 주요 선진국 제품안전에 대한 정책변화

주요 선진국인 미국, 일본, 유럽의 경우 제품안전문제는 사업자 스스로 공산품의 안정성을 확인하여 시장에 공급하는 민간중심의 자율안전관리 제도로 변모하고 있다. 이는 정부로 하여금 사업자 위해정보 통보 의무제, 공산품 안전정보 발령제 등 사후적 규제방식으로 수요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물론 국

민들의 제품안전 의식이 보편화되면서 제품 생산·유통 등에 대한 리콜제도가 보편화·정착되어 사후 안전관리의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리콜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확보와 제품안전에 대한 신뢰가 높은 편이다. 또한 세계화, 국제화는 후발 중진국(중국, 인도 등)의 공산품 안전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빈발하면서 국가간의 제품안전에 대한 표준화와 공조시스템 구축, 정보공유와 교류 등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제품안전과 관련한 국제협력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 우리나라 제품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인식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공산품)의 안전에 관한 문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의 주요 이슈이며, 소비자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 본 패러다임의 변화와 연계하여 제품안전과 관련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전문가와 관련 이해당사자의 인식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은 제품안전제도와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제품관련 학회 전문가, 제품관련 기업체를 중심으로 2010년 8-9월에 1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제품안전과 관련한 인식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응답자는 남성이 74.1%, 연령은 40대가 45.7%, 학력수준은 대졸자가 59.7%, 응답자 소속별로는 중소기업 종사자가 51.1%로 나타났다.



제품안전 기고문

가. 제품안전 전반에 관한 인식

제품은 무엇보다도 사용자가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조사대상자에게 사용하는 제품(공산품)은 사용하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46.2%가 제품사용이 '안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안전하지 못하다'는 응답율은 20.7%이었다.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제조 및 수입업자가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67.6%가 응답하였다. 정부와 기업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느냐는 질문에서 '정부'는 37.9%, '기업'은 42.7%로 나타나 정부노력이 다소 낮은 이유는 정부의 제품안전과 관련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홍보 미흡 및 체계적이고 강력한 정책추진이 부진한 결과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품 자체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제품안전과 관련한 제반 정보(안전제도와 정책, 인증제도와 정책, 리콜제도와 정책 등)를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율은 '정부'는 24.8%, '기업'은 29.8%로 두 집단 모두 제품 관련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향후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인식전환과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제품안전과 관련한 정부의 행정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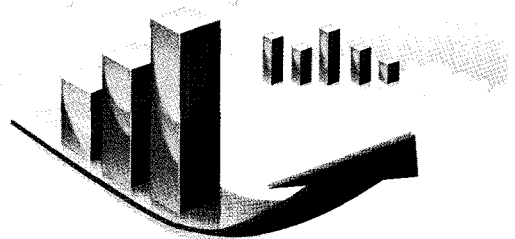
제품안전을 위해서는 이를 관리할 행정체계가 잘 구비되어야 하므로, 이를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율은 38.6%, '그렇지 않다' 응답율은 33.8%로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의 제품안전 행정체계가 몇몇 기관으로 분산되거나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의

조직과 기능도 아직 완비되지 않는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미비한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는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제품안전 관련 행정체계를 재정비하여 제품안전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 조직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및 사후적으로 제품안전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율이 30.3%로 비교적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제품안전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율이 전체 응답자의 33.1%로 나타나 자율적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품안전 행정조직과 인력이 확보되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자의 75.9%가 인식하였다.

다. 정부와 기업의 리콜제도에 대한 인식

주요 선진국에서는 제품의 리콜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소비자의 제품안전확보와 함께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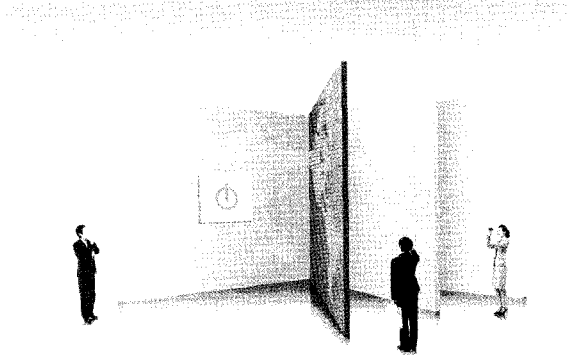
점차 리콜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리콜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와 기업은 제품리콜에 '적극적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정부' 25.5%, '기업' 31.5%로 나타나 정부와 기업 모두 리콜에 소극적이라고 인식하여 정부와 기업의 리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리콜제도를 강력하게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율이 전체 응답자의 80.7%로 나타나는 데에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라. 정부와 기업의 제품안전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제품안전인증제도는 자율인증과 강제인증이 있으며, 이러한 인증제도는 제품안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정부가 주도 또는 기업의 자율운영 방법이 있다. 초기에는 정부가 강제인증을 추진하다가 점차 기업의 자율인증을 인정하는 추세이다. 응답자들은 '제품안전인증제도의 정부 주도'에 대하여 67.6%가 찬성하여 아직 제품안전인증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인식은 상당부분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응답자의 68.3%가 정부가 제품안전인증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제품안전인증제도를 기업체가 자율적 실시'에 대해 응답자의 47.5%만이 찬성하여 시기상조임을 나타내고 있다.

마. 정부의 제품안전조사에 대한 인식

제품안전은 사전적, 사후적 안전조사가 확실하게 실시되는 경우 확보될 수 있는 속성으로 제품안전조사는 정부 또는 민간기관이 담당할 수도 있다. 응답자들은 '제품안전조사는 정부가 강력하게 실시'에 78.0%가 찬성하고 있다. 정부가 제품안전조사를 강



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및 기술적 자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대상자들에게 '정부의 제품안전조사를 위한 행정체계를 강화해야 한다'에 75.1%가 찬성하여 제품안전에 대한 강한 요구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인식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품안전 위반시 정부의 강력한 처벌'을 1순위로 선정하였다. 이하 제품안전확보와 관련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인식을 순위로 살펴보면 <표1>과 같다.

<표1> 제품안전확보 제도와 정책 (단위:%)

제품안전확보를 위한 제도와 정책	응답율(복수)	순위
제품안전 위반시 정부의 강력한 처벌	34.0	1
제품안전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 노력	32.6	2
제품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행정체계의 구축(정부, 학계, 기업, 시민단체, 협회 등)	31.9	3
정부의 제품안전조사 기능강화	24.1	4
제품안전 관련 정부 예산의 충분한 확보	21.9	5
시장(기업과 소비자)의 자율규제 강화	21.3	6
제품안전정책을 담당하는 조직 및 인력	18.4	7
제품안전 관련 정보의 충분한 공급	15.6	8

☞ 다음호에 계속